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2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3,077백만원에서 4,223백만원으로 1,146백만원 증가하였고, 「기타수입」 금액이 당초 0원에서 6백만원으로 순증하였음.
- 예치금 회수 :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600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528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18백만원)
  - 기타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(6백만원)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(재무활동) 금액이 당초 1,454백만원에서 2,606백만원으로 1,152백만원 증가하여 79.2% 변경되었음.
-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
수 입 합 계	4,137	5,289	1,152
전 입 금	1,000	1,000	-
이 자 수 입	60	60	-
기 타 수 입	0	6	6
예 처 금 회 수	3,077	4,223	1,146

### 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
지 출 합 계	4,137	5,289	1,152
비 용 자 성 사 업 비	2,680	2,680	-
기 본 경 비	3	3	-
예 처 금	1,454	2,606	1,152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대외협력담당관 대외정책팀 유다움(☎ 2133-6654)